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667
----------	------

제출년월일 : 2015. 6. ~~5.~~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에버그린21 명칭 변경하여 대외적인 인지도 확보
- 재단의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환경, 생태, 교육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에버그린21 명칭을 안산환경재단으로 변경
- 나. 환경, 생태, 교육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추가)

개정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5. 4.24.~ 5.14.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조례(전문)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산환경재단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재원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기관·단체·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 안산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조개정 2012.08.08]

1. 환경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산림·에너지등 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효율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생태공원 및 습지 등 환경관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 교류 협력 사업
8. 민간단체 환경보존사업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업
9.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직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2008.12.03>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자격, 임면, 임기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2008.12.03>

③ 이사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2008.12.03>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2008.12.03>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안산시의 일반회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수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사무 중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환경정책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환경정책과장 김 남 립
	담당·팀장 직위·성명	기후변화대응계장 이 갑 상
	담당자 성명·전화	김 병 제 (행정 292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에버그린21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립) 에버그린21(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p> <p>제3조(재원조성 등) 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생략) ② 시장은 법인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산 에버그린 환경인증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가정탄소포인트 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가정, 학교, 서비스, 공공기관, 기업부문에 버그린 환경인증에 관한 사항 2. 시민·단체 등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u>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안산환경재단.....</p> <p>제2조(설립) <u>안산환경재단</u>(이하 “재단”이라 한다).....</p> <p>제3조(재원조성 등) ① <u>재단</u>..... 1. ~ 4.(현행과 같음) ② <u>안산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p> <p>제4조(사업) <u>재단</u> 1. <u>환경인증제</u>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삭제> 나. <삭제> 2. 환경·산림·에너지 등 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효율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생태공원 및 습지 등 환경관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u>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u>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u>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u> 등에 관한 사항 7. <u>환경보존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 사업</u> 8. <u>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 및 협력</u> 등에 관한 사업 9. <u>환경개선 및 보존사업</u>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정관) ① 법인은 정관에 「민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p> <p>1. ~ 6.(생략)</p> <p>7.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5조(정관) ① 재단</p> <p>.....</p> <p>1. ~ 6.(현행과 같음)</p> <p>7. 재단</p> <p>② 재단</p> <p>.....</p>
<p>제6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p> <p>② (생략)</p> <p>③ 임원의 자격, 임면, 임기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6조(임원) ① 재단</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p>..... 재단</p>
<p>제7조(이사회)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② (생략)</p> <p>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7조(이사회) ① 재단</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p>..... 재단</p>
<p>제8조(대표이사) ① (생략)</p> <p>②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8조(대표이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재단</p> <p>.....</p>
<p>제9조(직원)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p>	<p>제9조(직원) 재단</p> <p>.....</p>
<p>제10조(수익사업) 법인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10조(수익사업) 재단</p> <p>.....</p>
<p>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따른다.</p>	<p>제11조(회계연도) 재단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사업계획 등)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업계획 등) ① <u>재단</u></p> <p>② <u>재단</u></p>
<p>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법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보고 및 검사) <u>재단</u></p> <p>..... <u>재단</u></p>
<p>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14조(공무원의 파견) <u>재단</u></p>
<p>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법인에게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p>	<p>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u>재단</u> ...</p> <p>..... <u>재단</u></p>
<p>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사무 중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6조(사무의 위탁) ①</p> <p><u>재단</u></p> <p>..... <u>재단</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시행규칙) (생략).</p>	<p>제1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2667
----------	------

제안년월일 : 2015년 7월 8일

제안자 : 도시환경위원장

수정이유

- (재)에버그린21에서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후 관련 사업의 확대를 검토

주요내용

-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 제4호 생태공원 및 습지 등 환경관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7호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사업 삭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u>인산 에버그린 환경인증 시행에 관한 사항</u></p> <p>가. <u>가정탄소포인트 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p>나. <u>가정, 학교, 서비스, 공공기관, 기업부문 에버그린 환경인증에 관한 사항</u></p> <p>2. <u>시민단체 등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제4조(사업) <u>재단</u></p> <p>1. <u>환경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u></p> <p>가. <삭제></p> <p>나. <삭제></p> <p>2. <u>환경·산림·에너지 교육에 관한 사항</u></p> <p>3. <u>에너지효율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u></p> <p>4. <u>생태공원 및 습지 등 환경관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5. <u>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p>6. <u>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u></p> <p>7. <u>환경보존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 사업</u></p> <p>8. <u>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업</u></p> <p>9. <u>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u></p>	<p>제4조(사업)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가. (개정안과 같음)</p> <p>나.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삭제></p> <p>4. (개정안 제5호와 같음)</p> <p>5. (개정안 제6호와 같음)</p> <p><삭제></p> <p>6. (개정안 제8호와 같음)</p> <p>7. (개정안 제9호와 같음)</p>